

#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7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,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,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  - 소재지 :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(대방동) 등
  - 지원시설 :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
    - ▶ 서울여성플라자 : 지하 3층, 지하 5층(연면적 22,519㎡)
    - ▶ 스페이스 살림 : 지상 7층, 지하 2층(연면적 17,957㎡)



서울여성플라자



스페이스살림(조감도)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조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【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1조(기금 및 출연금 등)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나. 주요사업

- 여성, 가족, 보육,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·개발
-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,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
-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,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
-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
-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·관리 등

다. '21년 소요예산(안) : 15,451,420천원

라. '21년 예산 산출근거(안)

- 사업비 : 6,865,636천원
- 일반관리비(인건비, 운영비 등) : 8,585,784천원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
-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,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,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,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#### 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【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22조의3(출자·출연의 동의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양경은(☎ 2133-5038)